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127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정식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1. 27.

판결 선고 2021. 2.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20. 3. 3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20. 6. 18. 접수 제1789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20. 3. 3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20. 6.

18.접수 제1789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4545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6. "C은 원고에게 58,289,506원 및 그 중 33,312,584원에대하여 200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3. 28. C에게 송달되어 2018. 4. 11.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D 명의로 등기되어있었는데 2020. 3. 30. D가 사망하여 피고와 C(각 자녀, 상속지분 1/2)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은 2020.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모두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20.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17893호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등기원인 2020. 3.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C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C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서구 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피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서구 대81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7.5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147000분의 38756 - 이상-

